##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31

발의연월일: 2023. 5. 11.

발 의 자: 권성동·김승수·윤한홍

임병헌 · 성일종 · 서병수

한무경 · 김상훈 · 윤창현

홍석준 · 서일준 · 엄태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바,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 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음.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1,000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기간 디지털 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두면 보고해야 함.

이에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및 제6조의2).

법률 제 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거래내역"을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의"를 "주식 및 가상자산의"로, "주식거래"를 "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거래내역"을 "거래내역"을 "거래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거래"를 "거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및 제6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2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	3
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	
財産權)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타.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u>주식거래내역</u> 의 신고)	제6조의2( <u>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u>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	<u>내역</u> 의 신고) ①
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	
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의 <u>주식의</u> 취	
득 또는 양도에 관한 <u>주식거래</u>	<u>주식 및 가상자산의</u>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u>거래</u>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주식거래내역</u>	② <u>거래내역</u>
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u>주식거래</u> 의	③ <u>거래</u>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